건축사법 시행규칙

1978. 12 건설부장관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축사법시행 규칙은 본문만을 계재하고 서식등은 별도 유인물로 통보하겠읍니다.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건축 보조사의 신고등) ① 법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보조사(이하 "보조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건축보조사신고에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 1 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를 한자가 법 제 2 조 제 2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보조사명부와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보조사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 일내에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보조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신고를 한 자가 성명·주소 또는 근무처를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 5 호 서식에 의한 보조사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영 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각 50부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시행규칙 제 1 조에 게기한 도서, 다만, 부안내도. 배치도 및 토지굴착부분정리계획도를 제외한다.

2. 특수공법에 대한 설명서(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 한한다.)

3. 특수구조와 시공법 및 자재에 대한 설명서(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 한한다).

4. 관계시험기관의 시험성과표사본

제 4 조(건축사자격시험응시 및 면허신청서) 영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시험응시 및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건축사명부 및 면허증등의 서식) 영 제 5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 8 호서식, 건축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한다) 은 별지 제 9 호 서식, 건축사 "면허수첩(이하 "면허수첩"이라한다)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 6 조(면허증등의 재교부신청등) ① 건축사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를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신상변동신고서등) ① 영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영 제2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 휴업. 폐업의 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제 9 조(경력의 인정기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및 법 제2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1,500원
2. 건축사 사무소등록 수수료 : 10,000원
3.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재교부 수수료 : 500 원
4. 건축사 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500 원

② 제 1 항의 각호의 수수료는 시험응시 원서 또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제11조(설계도서 신고서등)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신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검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행하며, 설계도서 신고대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현장점검등)건설부장관이 영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점검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③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건축사사무소 등록신청서등)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등록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한다.

제14조(사무소의 등록기준)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 및 시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용역업체소속 건축사의 신고등)① 영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플렌트엔지니어링 용역업체와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신원증명서 3. 면허증사본
4. 입사증명서 5. 소속용역업체의 등록증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용역업체를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소속 건축사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소등록증등)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등록부는 별지 제23호 서식, 합동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24호 서식, 단독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사무소등록증등의 재교부신청) ① 사무소 등록증 또는 용역업체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제26호 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합동사무소등록인의 확인등)①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날인할 건축사의 수는 별표 3에서 정한 건축사의 수로 한다.

제19조(장부)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등의 등록사항 기록부 2. 직원명부.
3. 설계수급대장 4. 공사감리기록대장.

② 제1항의 보조사의 등록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하고, 설계수급대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직원명부는 별지 제29호 서식,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위탁계약 해지시의 보수)법 제2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소정보수액의 8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건축사등에 관한경과조치)① 대통령령 제8,069호 건축사법 시행령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의 면허증.
2. 신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재교부하는 면허증은 별지 제31호 서식, 면허수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 개정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교부신청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다.

④ 개정령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영 제22조 각호의 서류와 종전의 등록증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보조사 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의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신고전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중 법 제2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 날 이후의 경력은 건축보조사의 경력으로 본다.